

2016년도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 검 토 보 고

###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 나. 의안번호 : 제1447호
- 다. 제출일자 : 2016. 10. 31
- 라. 회부일자 : 2016. 11. 4

### 2. 제안사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수도권 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15.6.28)에 따라 인천시에 지원하기로 한 제2외곽순환도로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 40,900백만원이 '15.9~11월까지 세입 처리되어 '15년도 일반회계 결산 후 순세계 잉여금으로 전입됨에 따라
- 나. '16년도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수입 및 지출 내역〉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당초 (A)	변경 (B)	증감 (B-A)	항목	당초 (A)	변경 (B)	증감 (B-A)
합계	20,000	60,900	40,900	합계	20,000	60,900	40,900
기타회계 전입금	20,000	60,900	40,900	자치단체등 이전	20,000	60,900	40,900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협의 : 예산담당관 협의 완료

## 5. 검토의견

### 가. 개요

-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2항<sup>1)</sup>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수입계획(기타회계전입금)과 지출계획(자치단체등 이전)에 있어서 각각 409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받고자 제출된 것임.

## 나. 검토의견

- 현행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이하 “주민지원계정”이라 함)과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sup>2)</sup>(이하 “환경개선계정”이라 함)으로 나누어 운용되고 있음.
- 환경개선계정은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 장기적 운영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재원은 경인아라뱃길 편입부지 보상금(1,025억원), 제2외곽순환도로 편입부지 보상금(409억원), 청라지역 및 주변도로 편입부지 보상금(236억원) 등 총 1,670억원임.

〈환경개선계정 인천시 지원 현황 및 향후 지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13년 ~ '15년	'16년	'17년	'18년 ~
경인아라뱃길	1,025	340	200	200	285
제2외곽순환도로	409	-	409	-	-
청라지역 등	236	-	-	-	236

- 이중 2외곽순환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409억원이 2015년 9월부터 11월 까지 세입처리<sup>3)</sup>되고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이후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입되어 있는 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15.6.28)<sup>4)</sup>에 따라 환경개선계정의 수입계획 중 ‘기타회계전입금’에 409억원을 증액하고, 인천시로의 이전을 위해 지출계획 중 ‘자치단체등 이전’에 409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본

2) 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 합의에 따라 존속기한 '2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였음('16.9.29 시행).

3) 1차 세입처리('15.9.22), 2차 세입처리('15.11.26)

4) 합의사항 중 “6. 서울시는 경인아라뱃길 및 제2외곽순환도로 등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매각대금을 인천시로 이전한다.”

변경안에 대한 이견은 없음.

〈4자협의체 주요 합의사항〉

구 분	합 의 사 항
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	◦ 사용면적 : 3-1공구(103만㎡) ◦ 대체매립지 조성 불가시 106만㎡ 범위 내 추가 사용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양도	◦ 매립 완료예정인 1,2매립장 및 기타부지 우선 양도 ◦ 잔여부지(3,4매립장)는 매립종료 후 일괄 양도 ◦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매각대금을 인천시로 이전
대체매립지 확보	◦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구성·조성 방안 마련
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	◦ 노조, 주민갈등 해소 등 선결조건 이행시 이관 동의

[참고자료]

---

##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

---

2015. 6. 28.



## 【 既 합의 내용】

-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지분을 자체 재산권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이를 인천시를 위해 사용한다는 점을 확약한다. 또한,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채를 인천시에 양도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내 경기도 관할구역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별도 협의한다.

## □ 세부이행사항

## ○ 기본 원칙

1. 환경부와 서울시는 제1, 제2 매립장 및 기타부지에 대한 면허권을 우선적으로 인천시에 양도하고 잔여부지에 대한 면허권은 사용종료 후 일괄 양도한다.
2. 양도대상 면허권의 해당부지에 경기도 관할구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세부 양도방안에 대해 인천시와 경기도가 별도로 협의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부와 서울시는 이에 따른다.
3. 환경연구단지 및 환경산업실증화단지 부지 등 국가시설로 필요한 공공용지에 대한 면허권은 양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가 보유한다.
4. 매립지공사 이관 전에 면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립지공사 사옥 및 매립지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부지에 대한 면허권은 환경부가 보유하며 매립지공사 이관 즉시 인천시로 양도한다.

5. 면허권의 양도방법은 관계법령에 따르되, 무상 양도를 우선 추진하며 부득이 유상 양도할 경우에는 매각대금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천시로 조속히 지원한다.
6. 서울시는 경인아라뱃길 및 제2외곽순환도로 등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매각대금을 인천시로 이전한다.
7.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법령해석에 따라 환경부 면허권은 무상 양도가 가능하고 서울시 면허권은 유상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 환경부는 제1매립장 및 기타부지, 서울시는 제2매립장에 대한 면허권을 각각 우선 취득한다.
8. 관계기관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등 면허권 이관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 면허권 양도 절차

- 제1, 제2 매립장 및 기타부지에 대한 면허권을 환경부는 무상 양도하고 서울시는 유상 양도할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양도
  - \* (환경부) 목적변경→일반재산 전환→기재부 협의→국무회의→대통령 재가→양여
  - (서울시) 목적변경→일반재산 전환→시의회 의결→매각→인천시에 재출연
- 제3, 제4 매립장에 대한 면허권은 사용종료 직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인천시 또는 경기도로 양도